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28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5937	김형동의원	2024. 11. 27.	·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
2212690	박해철의원	2025. 9. 4.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
--	--	--	----------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 11. 24.)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3. 부대의견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 ⑤ (생략)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